

食品添加物 規格 및 基準一部改正

調 査 部

보건사회부 고시 제86-48호

식품위생법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적 합성 품지정 및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6. 10. 17

보건사회부장관

화학적 합성품

화학적 합성 품종 334.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다음에 33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5. 이산화규소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 중 357. 이산화규소의 규격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7.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Synthetic Amorphous Silica

이산화규소는 X-ray회절법으로 관찰할 때 비결정성 양상을 띠는 무정형 물질로서 증기상 가수분해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연소(콜로이달) 실리카와 습식 방법에 의한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또는 수화실리카이다.

SiO₂

분자량 60.08

이산화규소의 성분규격

함량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전조한 후 이를 900~1,000°에서 1시간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규소(SiO₂=60.08)가 연소실리카는 99% 이상,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수화실리카는 94% 이상을 함유한다.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분말 또는 입자로서 냄새가 없고 흡습성이 있다.

확인시험

(1) 이 품목 5mg을 백금도가니에 취하고 무수탄산칼륨 200mg을 가하고 버너의 붉은 불꽃상에서 10분간 작열시키고 식힌 다음 새로 증류한 증류수 2ml에 녹이고 필요하면 가온한 액에 암모늄 몰리브덴산액 2ml를 서서히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2) 확인시험 (1)의 용액 1방울을 여지위에 떨어뜨리고 용매를 유거시킨 다음 이에 0—톨리딘포화방초산용액 1방울을 가해주고 강암모니아액 위에 쪼이면 녹청색의 반점이 생긴다.

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 0.25g을 500ml의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2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색 또는 잎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 다음 식히고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ml를 가하여 황산의 희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강암모니아시액 또는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ppm이하)

(2) 중금속 : 이 품목 1g을 석영체 또는 자제도가

니에 취하여 황산 1ml를 가하여 적시고 될 수 있는대로 저온에서 거의 탄화시킨 다음 방냉하고 다시 황산 1ml를 가하여 서서히 가열한 다음 황산의 흰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잔류물이 무색이 될 때까지 450~550°로 강열하고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1ml 및 황산 0.2ml를 가하고 가열하여 녹인 다음 식히고 페놀프탈레인 시액 1방울을 가하여 액이 짙은 흥색을 나타낼 때까지 암모니아시액을 적기한 다음 둑은 초산 2ml를 가하고 필요하면 여과하고 이를 시험용 액으로 하여 중금속시험을 할 때 30ppm이하 이어야 한다.

(3) 납 : 이 품목 1g을 500ml의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색 또는 짙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여 황산의 흰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30ml를 가하여 강암모니아시액 또는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고 필요하면 이를 증발 농축하여 물을 가하여 전량을 50ml로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이 액 40ml를 취하여 납시험법(디티존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가용성 이온화 염류 : 이 품목의 분말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5g을 정밀히 달아 물 150ml를 가하고 고속 혼합기로 5분간 혼합한다. 이를 흡인 여과하고 물 100ml로 여과기와 잔류물을 씻어 이를 먼저의 여액과 합치고 물을 가하여 전량을 250ml로 한다.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적당한 전도율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전도율을 측정할 때 이의 전도율은 물 250ml에 무수아황산나트륨 250ml를 녹인 액의 전도율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전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연소실리카는 2.5%이하, 침강실리카 및 실리카겔은 7%이하, 수화실리카는 70%이하이어야 한다.

강열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1g을 정밀히 달아 900~1,000°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연소실리카는 2%이하,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및

수화실리카는 8.5%이하이어야 한다.

정량법

이 품목 약 1g을 무게를 달은 백금도가니에 취하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하고 900~1,000°에서 1시간 강열 후, 데시케타에서 냉각시켜 무게를 달아 겉체의 무게(W_1)를 구한다.

잔류물을 알콜 3~4방울로 적시고 황산 2방울을 가한 다음 잔류물이 잠길 정도로 불화수소산을 가한다. 95~105°의 열판에서 증발시키고 다시 불화수소산 5ml를 가하여 기벽을 쟁고 다시 증발시킨다. 잔류물을 적색이 될 때까지 베너상에서 자열 후 데시케타에서 냉각시켜 무게를 달아 잔류물의 양(W_2)을 구한 후 다음 식에 따라 이산화규소의 양을 구한다.

$$\text{이산화규소의 양}(\%) = \frac{W_1 - W_2}{W_1} \times 100$$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중 41. 니코틴산, 42. 니코틴산아미드, 71. 명반, 116. 삼이산화철, 123. 소명반, 124. 소암모늄명반, 130. 수용성안나토, 175. 암모늄명반, 208. 이염화이소시아돌산나트륨, 250. 차아염소산나트륨, 271. β -카로틴, 324.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니코틴산

니코틴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니코틴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육 및 선어폐류(경육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2. 니코틴산아미드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육 및 선어폐류(경육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1. 명반

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6. 삼이산화철

삼이산화철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삼이산화철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바나나(꼭지의 절단면), 곤약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3. 소명반

소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소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4. 소암모늄명반

소암모늄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소암모늄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0. 수용성안나토

수용성안나토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수용성안나토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식육, 어패류, 과실, 야채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75. 암모늄명반

암모늄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암모늄명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8.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0.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71. β-카로틴

β-카로틴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β-카로틴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식육, 어패류, 과실, 야채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24.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생면 및 오징어훈제품에 있어서 2%이상, 만두 및 만두껍질에 있어서 1.2%이상, 기타 식품에 있어서 0.6%이상 남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중 제6첨가물의 일반 사용기준, 12. 과산화벤조일(희석), 5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84. 부틸히드록시아니솔, 87. 브롬산칼륨 140. 식용색소 녹색 제3호, 141.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142. 식용색소 적색 제

- 2호 143.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44. 식용색소 적색 제3호, 145.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146.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147. 식용색소 청색 제1호, 148.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149. 식용색소 청색 제2호 150.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51. 식용색소 황색 제4호, 152.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153. 식용색소 황색 제5호, 154.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164. 아스파탐, 169. 안식향산, 170. 안식향산나트륨, 200. 5'-이노신산나트륨, 319. 프로피온산나트륨, 323. 프로피온산칼슘, 342. 황산동, 344. 황산아연의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 6첨가물의 일반 사용기준중 “가. 이유식에는 영양강화제 이외의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가. 이유식에는 강화제, 카제인, 카제인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구아검, 로커스트콩검, 가라기난,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텔,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구연산, 젓산, 엘-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바니라추출물, 에틸바니린, 바니린, 맥아효소, 제2인산칼륨 이외의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2. 과산화벤조일(희석)의 과산화벤조일(희석)의 사용기준중 “소맥분 및 압맥”을 “소맥분”으로 한다.

5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중 “어개건제품”을 “어폐건제품”으로 “어개염장품”을 “어폐염장품”으로 하고 “어개냉동품 및 고래냉동품에 있어서는 그 침지액 1kg에 대하여 1g”을 “어폐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및 생식용 굽은 제외한다) 및 고래냉동품(생식용은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침지액 1kg에 대하여 1g”으로 하고 “다부틸히드록시톨루엔”을 “다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 한다.

84.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의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중 “어개건제품, 어개염장품”을 “어폐건제품, 어폐염장품”으로 하고, “어개냉동품 및 고래냉동품에 있어서는 그 침지액 1kg에 대하여 1g”을 “어폐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및 생식용 굽은 제외한다) 및 고래냉동품(생식용은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침지액 1kg에 대하여 1g”으로 한다.

87. 브롬산칼륨의 브롬산칼륨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용기준 중 “소맥분”을 “제빵용소맥분”으로 하고 “있어서는 그 1kg”을 “있어서 그 1kg”으로 한

다.

140. 식용색소 녹색제 3호의 식용색소 녹색제 3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녹색제 3호……아니된다”를 “식용색소 녹색제 3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것갈류, 천연식품(식육, 어패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캐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1. 식용색소 녹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녹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녹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아니된다”를 “식용색소 녹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것갈류, 천연식품(식육, 어육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캐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2. 식용색소 적색제 2호

식용색소 적색제 2호의 식용색소 적색제 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적색제 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적색제 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것갈류, 천연식품(식육, 어육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캐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3. 식용색소 적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적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적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적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적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것갈류, 천연식품(식육, 어육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캐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4.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식용색소 적색제 3호의 식용색소 적색제 3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적색제 3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적색제 3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것갈류, 천연식품(식육, 어육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캐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5.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것갈류, 천연식품(식육, 어육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캐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크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6. 식용색소 적색제40호

식용색소 적색제40호의 식용색소 적색제40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적색제40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적색제40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꽤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짬, 고추가루,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7.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식용색소 청색제 1 호의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꽤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짬,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8.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청색제 1 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꽤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짬, 고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49.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식용색소 청색제 2 호의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꽤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짬,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50.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황색제 2 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아니된다”를 “식용색소 청색제 2 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꽤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짬, 후추가루, 카래,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51. 식용색소 황색제 4 호

식용색소 황색제 4 호의 식용색소 황색제 4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황색제 4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아니된다”를 “식용색소 황색제 4 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꽤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젤,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레,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52. 식용색소 황색제 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황색제 4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황색제 4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황색제 4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황색제 4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젓갈류, 천연식품(식품, 어패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젤,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레,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53. 식용색소 활색제 5호

식용색소 황색제 5호의 식용색소 황색제 5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황색제 5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황색제 5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젓갈류, 천연식품(식품, 어패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젤,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레,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54. 식용색소 황색제 5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황색제 5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식용색소 황색제 5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 황색제 5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 아니된다”를

“식용색소 황색제 5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생과일쥬스, 목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패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젤,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레, 식육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세이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아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분말청량음료는 제외한다), 식빵, 카스테라, 스폰지케익, 마마레이드,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및 가공유류는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64. 아스파탐

아스파탐의 아스파탐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아스파탐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 아니된다”를 아프파탐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가열조리를 요하지 않는 식사대용 곡류가공품(이유식 제외), 청량음료, 젤, 다류(분말청량음료 포함), 식탁용 감미료, 아이스크림, 빙과(샤베트 포함), 젤, 주류, 분말스프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169. 안식향산

안식향산의 안식향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청량음료수(탄산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량음료수(탄산을 함유한 음료, 두유제품, 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70.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의 안식향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청량음료수(탄산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량음료수(탄산을 함유한 음료, 두유제품, 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 5'-이노신산나트륨

5'-이노신산나트륨의 성분규격의 성상중 “특이한 냄새”를 “특이한 맛”으로 한다.

319.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나트륨의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중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 2.5g이하이어야 한다.”를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빵, 생과자 및 치즈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써 빵 및 생과자에

<28면에 계속>